

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(이하 “지역채투자 평가”라 한다)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, 지역채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0조의2(여신업무 기준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0조의2(여신업무 기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<u>④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(이하 “지역채투자 평가”라 한다)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, 지역채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은행과
연락처	02-2100-2730